

2019년도 제4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발언자	발언내용
간 사 (구 매 팀 장)	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6조에 의거, 재적위원 8명 중 7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 원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제주삼다수 신규공장(L5) 캡사출기 제조·구매·설치』 계약방법 심의건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의가 되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19-04호 심의건을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 산 3 팀 장	<<제2019-04호 부의안건 설명 >>
위 원 장	생산3팀장으로부터 제안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L5공장에는 캡사출기가 설치되어 있지않아서 다른 라인의 캡사출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송장치가 구현되지않아 하루에 약30회 정도 지게차를 통해 이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ロス 및 안전을 고려하여 L5공장 내에 캡사출기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보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위 원	의안명을 보면 캡사출기 제조 구매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법률상으로는 제작물 공급 계약에 해당됩니다. 캡사출기가 기계라고 한다면 특수기계 설치 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라는 말은 빼야 되는 것이죠.
△ △ △ 위 원	캡사출기는 발주후에 제작되는 겁니까? 기성품이 없나요?

발언자	발언내용
생 산 3 팀 장	네 기성품이 없고 발주 후에 제작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 원 장	96캐비티는 한번에 96개를 찍어내는 걸 말합니다. 시간당 몇 개죠?
생 산 3 팀 장	62,000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 원 장	그러니깐 한번에 96개씩 찍어내서 시간당 62,000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 ◇ ◇ 위 원	캡사출기 이전에 계약했던 사항은 있나요?
생 산 3 팀 장	기존에는 48캐비티가 최대였습니다. 2013년에 마지막으로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위 원	기존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건가요?
생 산 3 팀 장	네 그렇습니다.
▽ ▽ ▽ 위 원	캡사출기 200톤이상으로 제한했는데, 여기서 200톤은 무슨 의미죠? 그리고 전세계에서 200톤이상 할 수 있는 업체는 몇군데나 있나요?

발언자	발언내용
생 산 3 팀 장	국내에 있는 캡사출기는 48개짜리밖에 없고, 96개는 최초입니다.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48캐비티의 형체력을 계산하면 200톤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글로벌업체를 기준으로 200톤의 경우 5개정도의 업체가 가능합니다. 국내 업체도 2군데 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6캐비티의 경우에는 약 2군데 정도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캡사출기의 경우 96캐비티라하면 한번에 96캐비티를 찍는데 재료가 흘러나가지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압력을 형체력이라고보면 되겠습니다. 96캐비티의 경우 약 400톤의 압력, 형체력이 있어야 온전하게 찍어낼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 산 3 팀 장	금형이 하루에 작동하는게 약 12,000번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400만번, 500만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10년, 20년 설비를 써야되니까 이 정도의 압력을 견디려면 형체력 400톤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 ▽ ▽ 위 원	사출기 오퍼레이터 조작패널 언어는 한국어, 영어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추가란 말이 맞는건가요?
생 산 3 팀 장	제작업체들의 경우 원제조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도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국 언어에 추가로 한국어, 영어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 ▽ ▽ 위 원	교육훈련비가 3천5백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원제작사가서 교육받는거죠? 몇 명이 받는거죠?
생 산 3 팀 장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명이든 두명이든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자재도 쓰고 해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액이 그정도 들어가야됩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인원을 추가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 ▽ ▽ 위 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명시해서 가는게 좋지 않을까요? 굳이 협상과정에서 정하지 않고.. 그리고 원가계산의 경우 1군데만을 대상으로 되어있네요.
생 산 3 팀 장	1군데에서는 국내 지사장 및 영업파트 인력이 바뀌고 전시회 등으로 인해서 여력이 안된 상황입니다. 견적에 대해서도 기간이 계속 오래 지연되면서 사업일정을 감안하여 발주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1군데 견적으로 원가계산하게 되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가격점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96캐비티가 특별한 사양이 아니라서 평가점수를 8:2가 아니라 7:3으로 할 수 있지않나요? 가격점수 200이 아니라 300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공사만을 위한 특별한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10%의 범위에서 점수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생 산 3 팀 장	48캐비티의 경우 일년에도 수차례 제작을 하지만 96캐비티의 경우 4~5년에 한번 만들까 말까한 사양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 ◇ ◇ 위 원	투찰 가능업체를 몇 개 업체로 예상하시나요?
생 산 3 팀 장	2개 업체 예상하고 있습니다.
◇ ◇ ◇ 위 원	평가지표를 보면 금형은 없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생 산 3 팀 장	금형의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요구하는 금형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금형에 대해 사출기가 압력을 견디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금형은 점수가 아니라 100%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죠.
◇ ◇ ◇ 위 원	캡사출기의 점수배점이 크네요.
생 산 3 팀 장	제일 중요한게 캡사출기 수량이기도 하고 62,000이면 성능이 보통의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점수를 부여하면 제안사에서는 설계치를 올려서 성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점수 배분을 이와같이 했습니다.
△ △ △ 위 원	이성능은 조사를 통해서 이뤄진거죠?

발언자	발언내용
생 산 3 팀 장	네 조사결과 62000~63000개의 성능은 충분히 가능한 설비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62000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사의 역량에 따라 성능이 높은 설비로 제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의 의지에 따라 성능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 ◇ ◇ 위 원	2군데 이상의 업체가 그정도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보는거죠?
생 산 3 팀 장	2군데 업체는 전세계에서도 라이벌업체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원 장	96캐비티의 경우 일반적인 설비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간간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다수의 경우 기술력이나 생산량에 있어서도 세계 탑클래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납품했다는 것은 이들 업체에게는 영업력 측면에서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업체들에게도 중요한 실적이 되는것이죠.
◇ ◇ ◇ 위 원	금액으로 봤을때도 42억 정도면 큰 금액인가요?
위 원 장	캡사출기만 봤을 때 큰 금액이죠.
◇ ◇ ◇ 위 원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이 있다고 보는거죠?
생 산 3 팀 장	네 그렇습니다.
△ △ △ 위 원	이전에 캡사출기의 경우 금액이 어떻게되나요?

발언자	발언내용
생 산 3 팀 장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48캐비티이기 때문에 이금액의 절반 수준일거라 봅니다.
◇ ◇ ◇ 위 원	제가 봤을때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봤을 경우 기술점수에서가 아니고 가격에서 갈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점수 30이나 20이나 차이가 없을 것 같네요.
△ △ △ 위 원	기술점수에서 차이가 많이 안날 거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욱 가격점수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생 산 3 팀 장	L5때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4~5군데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격점수에서 갈릴 수 있지만 2군데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격점수에서 큰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위 원	30점으로 해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높아지는거죠.
위 원 장	유틸리티 등도 전부 외산설비인가요?
생 산 3 팀 장	아닙니다. 유틸리티 및 부대설비는 국내입니다.
위 원 장	그렇다면 여기에서 관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국외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기술력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국내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중요 할수도 있는거죠. 부대설비 개념이긴 하지만..
▽ ▽ ▽ 위 원	부대설비를 봤을 때는 거의 기성품 같은 개념으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지 않나요?

발언자	발언내용
생 산 3 팀 장	사출기나 금형의 경우에는 냉동기가 중요해서 부대설비도 중요합니다. 일반 냉동기가 아니고 사출기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위 원 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비를 운용하는 담당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3팀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생 산 3 팀 장	가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시면 점수 배점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가위원분들이 기계, 화학 등 전문가인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질의 등을 통해서 기술점수에 차이는 발생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캡사출기는 오래사용한게 얼마나 됐죠?
생 산 3 팀 장	초창기 때 20년 정도 됐습니다.
위 원 장	20년 정도 내외 써야할 설비이기 때문에 그정도 감안했으면 합니다.
◎ ◎ ◎ 위 원	대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생 산 3 팀 장	선급금, 중도금, 잔금입니다. 선급금이 나가고 입고에 따라 중도금이 분할 되어 지급됩니다.
◎ ◎ ◎ 위 원	시운전 과정을 거치고 통과되면 잔금이 지급되는거죠?

발언자	발언내용
생 산 3 팀 장	네 그렇습니다.
◎ ◎ ◎ 위 원	49페이지의 하자보증기간에서 반괄호 1번에는 문제가 없고요. 2번을 보면 법률적으로 보면은 제작물 공급계약에서는 대체물이면 매매의 규정이 적용되고 부대체물이면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캡사출기의 경우는 대체물인가요? 부대체물인가요?
생 산 3 팀 장	대체물입니다.
◎ ◎ ◎ 위 원	<p>그렇다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적용이되는데 무과실책임입니다.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납품한 설비의 결함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완성물의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게 법률상으로 맞습니다. 원래 하자의 개념은 완성물의 교환가치 사용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거나 그 완성물이 예정된 성질을 갖추지 못하다면 이것을 물건의 하자로 봅니다. 그래서 설비의 결함 등의 말은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계약특수조건 22조 5항부분도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바뀌어야 됩니다.</p> <p>그리고 반괄호 3을 만들어가지고 완성물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개발공사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이때는 확대 손해배상이 되는데 이렇게 가는게 법률상 맞습니다.</p>
생 산 3 팀 장	네 알겠습니다.
◎ ◎ ◎ 위 원	그 다음에는 50쪽을 보면 기타에서 반괄호 4번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이말은 빼야합니다. 왜냐하면 설비반입, 설치, 시운전, 성능시험, 인수시험의 경우 개발공사의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오로지 계약상대자의 지배력하에서 이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58쪽 신의 성실의 원칙 문구는 띄어쓰기에 문제가 있네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p>혹시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에서 구매팀이나 발주부서에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가격점수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되 발주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의안명은 한상인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하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규격서 49, 50, 58페이지에 대해서 반영할 사항을 실무부서에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는 동안에 5분가량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정회 >></p>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외에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 □ □ 위원	<p>네 계약특수조건 제11조를 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협상서, 입찰설명서, 제안서, 입찰공고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계약문서의 상충되는 내용은 25조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습니다. 25조를 보면 우선 계약서 그리고 기술협상서 순이고 기술규격서,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은 평행하게 되었는데요. 세가지의 내용이 다른경우에는 기술규격서를 우선한다는 말인가요?</p> <p>그리고 기술규격서라는게 이 건의 경우는 명확한 규격서 작성이 어려워서 협상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규격서 자체를 명확하게 둘수 없단말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자의 경우 기술규격서에 의해서 파악하기 어렵지 않나요?</p>
생산 3 팀 장	기술규격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2번을 보시면 기술협상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사의 제안서와 기술규격서를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규격서와 상충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협상서를 규격서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밑에 3개는 협상을 하면서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 □ □ 위원	네 그런데 세 개 항목을 나란히 두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리를 해두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번호를 매겨서 한다든지요. 본계약서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을 전부 계약문서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하신건가요?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계약을 할때 입찰공고문부터 전부 계약문서로 보고있습니다.
○○○ 위원	적용순서상에 다름이 있을 수 있으니 3번의 세 개항에 대해서도 순서를 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큰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산 3팀장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그런데 계약특수조건의 경우에 계약문서에서 우선순위로 하시나요?
◇◇◇ 위원	보통 계약에서는 계약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시방서의 순서인데요. 입찰공고문은 계약문서의 해석 우선순위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입찰공고문도 계약문서는 맞잖아요.
◇◇◇ 위원	계약문서라는게 계약서에 붙은 서류라서 입찰공고문이 계약문서라는 어감이 이상 할 순 있지만, 해석순위에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계약서의 전단계에서 청약을 유인하느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문서에 들어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19페이지 입찰참가신청서에서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의 5%인데 밑에보면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이라고 되어있어서. 이 금액은 다르지 않나요?

발언자	발언내용
구 매 팀 장	지금 확약의 경우는 낙찰됐을 때 계약을 미체결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 되는 사항입니다.
□ □ □ 위 원	금액이 서로 다르면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구 매 팀 담 당 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한번더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 □ □ 위 원	10페이지를 보면 제안요청서 질의는 서면으로 진행하는데 직접접수 및 팩스만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메일은 안받는 다는 건가요?
구 매 팀 담 당 자	서면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로 하고 구두에 의한 질의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입찰공고문상에 이메일 주소 등은 명확히 명기하고 제안요청서에도 이메일 가능하다고 명기하겠습니다.
□ □ □ 위 원	제안요청서해보면 공동계약 불가라고 되어있는데 18페이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서 공동수급구성원 포함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구 매 팀 담 당 자	일반적인 문구가 들어가다보니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문구 수정하겠습니다.
□ □ □ 위 원	16페이지를 보면 경영상태 평가에서 평가결과가 2개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한다고 되어있는데 최저점으로 평가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발언자	발언내용
생 산 3 팀 장	이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그대로 준용해서 적용한 사항입니다.
□ □ □ 위 원	합병의 경우에는 낮은 점수로 평가하는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게 하는 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위 원 장	2호와 4호와는 상충되는 표현으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표현한 것은 아니고 지방계약법을 준용한 사항입니다.
◎ ◎ ◎ 위 원	이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한번더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p>네 아주 심도있는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p> <p>먼저 의안명 발주시에 계약명이 될텐데 캡사출기 특수기계설치제작계약으로 해주시고 이와 유사한 건에서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점수 기술점수 배분에 대해서는 실제 운용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p> <p>하자보증기간에서는 2항에서 다만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하고, 3항에서 완성물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개발공사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p> <p>그리고 50페이지의 경우 일부 문구를 조정해주시고, 58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은 문법에 맞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그리고 10페이지 질의접수에서 이메일 접수도 명확하게 명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16~17페이지의 신용평가부분에서는 계약부서와 실무부서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p> <p>그다음 18페이지에서 공동수급자 부분은 앞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십시오. 19페이지의 입찰보증금에서도 관련법령을 다시한번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p> <p>그리고 62페이지 분쟁의 해결에서는 최근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문서의 우선순위는 적절하게 순위를 정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에 의견있으십니까?</p> <p>네 그러면 2019-04호 제주삼다수 신규공장(L5) 캡사출기 특수기계 설치 제작 계약방법 심의의 건은 일부 수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